

#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9. 10. 19(월)

건설교통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9. 9. 28.

나. 제안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09. 9. 28.

라. 상정일자 : 2009. 10. 12(제177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)

- 제안설명 : 건설교통국장 홍준호
- 검토보고 : 건설교통전문위원 김동호
- 질의 및 토론
- 원안가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### 가. 제안이유

-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, 과도한 행정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시민 편의 도모하며
- 현실성 없는 개인택시차고 보유 의무 제도를 면하여 상대적으로 영세한 개인택시 사업자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

### 나. 주요내용

- 개인택시사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관련 법령의 취지에 따라 차고 확보 의무를 면제하여 영세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함.(안 제37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- 본 개정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면허기준과 시행규칙 별표2의2에 근거하여 종전에는 개인 택시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을 10~13㎡로 정하였으나
-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영업 활동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으며 생계형 영세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자 조례 제37조를 신설하여 개인택시의 보유차고의 면적 기준을 폐지코자하는 사안임.
- 법령의 범위내에서 조례가 성안되었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행정 규제를 완화하여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하는 사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병행하여 인천광역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칙 제13조 (개인택시 차고시설 확인) 조항도 동시에 개정되도록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#### < 질 의 >

- 이재호 위원
  - 이 조례에 대하여 동감한다. 한가지 주문을 하는데 소형화물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도 형평성에 맞게 검토하시기 바람?

#### < 답 변 >

- 건설교통국장 홍준호
  - 화물은 항만공항물류국 소관이다. 화물은 타지역에서 오는 것이 많은데 소관부서인 항만공항물류국에 협의하여 검토하겠음.

### 5. 토론요지

- 가. 찬성 : 문희출, 강문기, 허식, 노경수, 성용기, 이재호, 이은석, 박승희 위원
- 나. 반대 : 없 음

## 6. 심사결과

- 원안가결(재석위원 전원 찬성 : 8명)

## 7. 기타 특이사항

- 없 음

- 붙임 1.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 
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

인천광역시조례 제 호

#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장(제37조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 제9장 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

제37조(보유차고 면적기준)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별표 2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기준 중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조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 설&gt;</p>	<p>제9장 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            제37조(보유차고 면적기준) 「여            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           별표 2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            사업의 면허 기준 중 개인택시            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유차고의            면적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